



서울고등법원

제23민사부

판결

사 전 2024나2011243 유류분반환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주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창

담당변호사 송인혁, 이해승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1가합587395 판결

변론종결 2024. 10. 11.

판결선고 2024. 11.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0,004,6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8.부터 2024. 11. 2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17,069,3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7.부터 2024. 11. 2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B은 467,300,280원, 피고는 394,877,35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8.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회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447,475,0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7.부터



이 사건 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피고 B"은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피고 C"는 "피고"로, "피고들"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중 제2쪽 이유 이하 제3행의 "(이하 D를 '고인1'이라고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쪽 이유 이하 제4행의 "고인1"을 "모친인 망 D"로 고치며, 제1심판결 중 제5 내지 6쪽의 각 "고인1"을 "망 D"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중 제3쪽 제9행의 "신탁계약"을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중 제3쪽 제10행의 "(이하 E을 '고인2'라고 한다)"를 "(이하 E을 '망인'이라고 한다)"로 고치고, 제1심판결 중 각 "고인2"를 "망인"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중 제4쪽 제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text{유류분 부족액} = [\text{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times \text{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 \text{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text{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유증 포함)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익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제1심판결 중 제4쪽 제7행의 "가."를 "1)"로, 제20행의 "나."를 "2)"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중 제5쪽 제1 내지 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적극적 상속재산액(유증재산 포함)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유증재산 포함)은 여주시 M 전 1,795㎡ 중 지분 1/3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가액이 2,299,309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증여재산

(1) 망인의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증여 등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4, 78 내지 8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생전에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재산을 각 증여한 사실이 인정된다.¹⁾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9

피고에 대한 증여 등					
순 번	증여일시	증여 내용	증여액(원)	상속개시 당시 가액(원)	비고
1	2010. 6. 18. ~ 2012. 4. 23.	현금	168,100,000	195,769,088	이하 (나)항 참조
2	2020. 3. 25.	현금	1,000,000,000	1,000,000,000	다툼 없음
3	2020. 4. 22.	현금	100,000,000	100,000,000	이하 (라)항 참조
4	2020. 6. 17.	현금	50,000,000	50,000,000	
5	2021. 7. 27. ~ 2021. 8. 4.	현금	95,000,000 ²⁾	95,000,000	다툼 없음
6		현금 ³⁾	825,766,187	825,766,187	이하 (마)항 참조
7		현금 ⁴⁾	375,000,000	375,000,000	
합계			2,613,866,187	2,641,535,275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증여 등					
순 번	증여일시	증여 내용	증여액(원)	상속개시 당시 가액(원)	비고
1	2020. 3. 25.	현금	1,000,000,000	1,000,000,000	다툼 없음
2	2020. 4. 22.	현금	100,000,000	100,000,000	이하 (라)항 참조
3	2020. 6. 17.	현금	100,000,000	100,000,000	
4	2021. 7. 27. ~ 2021. 8. 4.	현금	95,000,000	95,000,000	다툼 없음
5		현금	825,766,187	825,766,187	이하 (마)항 참조
6		현금	375,000,000	375,000,000	
합계			2,495,766,187	2,495,766,187	

(나) 망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중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원고는, 2010. 5. 26.경부터 2016년경까지 망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

- 1) 본래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불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나(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 증여 당시에 비해 상속개시 당시의 물가가 상승한 이 사건에서 아래 표의 피고에 대한 증여내역 중 순번 1번을 제외한 망인의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각 증여와 사망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1년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도 이 부분에 대하여 GDP 디플레이터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피고 증여내역 순번 1번을 제외한 현금 증여에 대하여는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지 않는다.
- 2) (피고들이 상속재산으로 가진 신고한 150,000,000원 + 누락된 상속재산으로 추가 신고된 40,000,000원) × 1/2, 이 부분 현금의 상속세와 관련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었으나,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 명의 계좌 등에 남아 있던 것이 아니고 망인의 사망 이전에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증여된 것이므로, 유증 재산이 아닌 생전 증여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을 제95호증의 1, 2 등 참조).
- 3) 이 사건 신탁재산 중 예금 부분
- 4) 이 사건 신탁재산 중 보증금반환채권 부분, 이 부분은 현재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하여 750,000,000원이 공탁되어 있으므로, 편의상 '현금'으로 기재하였다.



금 중 합계 488,088,026원은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는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4, 78 내지 8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명의 계좌(N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입금이 이루어졌고, 그중 순번 1 내지 32번의 입금 내역과 같은 날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같은 금액이 입금된 점, ② 위 입금일시와 같거나 근접한 날에 망인 명의 계좌에서도 같거나 비슷한 금액의 현금이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증여 외에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같은 날 상당한 액수에 해당하는 같은 금액이 입금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피고 명의 계좌로 2012. 4. 20. 13,000,000원이 입금되었고(아래 표 순번 33번), 같은 날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5,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위 입금일 하루 전인 2011. 4. 19. 망인 명의 계좌에서 18,000,000원이 출금되었는바, 위 출금액은 2011. 4. 20.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입금된 금액의 합계 18,000,000원(= 13,000,000원 + 5,000,000원)과 일치하는 점, ⑤ 피고 명의 계좌로 2012. 4. 23. 10,000,000원이 입금되었고(아래 표 순번 34번), 같은 날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7,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그로부터 근접한 날인 2011. 4. 20. 망인 명의 계좌에서 17,000,000원이 출금되었는바, 위 출금액은 2011. 4. 23.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입금된 금액의 합계 17,000,000원(= 10,000,000원 + 7,000,000원)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이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원고의 주장 금액 중 합계 168,100,000원은 증여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195,769,088원(= 158,456,514원⁵⁾ + 11,084,402원⁶⁾ + 26,228,172원⁷⁾)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5) = 135,500,000원 × 2021년 GDP 디플레이터 108.417/2010년 GDP 디플레이터 92.71(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6) = 9,600,000원 × 2021년 GDP 디플레이터 108.417/2011년 GDP 디플레이터 93.898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순번	입금 일시	금액(원)	순번	입금 일시	금액(원)
1	2010. 6. 18.	7,000,000	18	2010. 8. 25.	3,500,000
2	2010. 6. 28.	4,500,000	19	2010. 8. 26.	3,250,000
3	2010. 6. 30.	4,500,000	20	2010. 9. 2.	4,800,000
4	2010. 7. 1.	9,950,000	21	2010. 9. 6.	4,700,000
5	2010. 7. 2.	9,950,000	22	2010. 9. 13.	3,500,000
6	2010. 7. 6.	5,000,000	23	2010. 9. 27.	4,500,000
7	2010. 7. 7.	4,500,000	24	2010. 9. 30.	4,800,000
8	2010. 7. 14.	4,500,000	25	2010. 10. 13.	4,800,000
9	2010. 7. 19.	3,000,000	26	2010. 10. 14.	4,750,000
10	2010. 7. 20.	2,900,000	27	2010. 10. 22.	4,150,000
11	2010. 7. 21.	3,000,000	28	2010. 11. 4.	2,150,000
12	2010. 7. 22.	2,500,000	29	2010. 11. 24.	4,650,000
13	2010. 7. 26.	2,750,000	30	2010. 12. 2.	4,750,000
14	2010. 8. 9.	3,500,000	31	2011. 1. 7.	4,750,000
15	2010. 8. 12.	4,500,000	32	2011. 1. 17.	4,850,000
16	2010. 8. 17.	4,650,000	33	2012. 4. 20.	13,000,000
17	2010. 8. 23.	4,500,000	34	2012. 4. 23.	10,000,000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그 외 현금 증여액은 앞서 인정된 증여액과 같이 같은 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중 제5쪽 제6행의 "이에 대하여 원고는"을 "(다) 또한 원고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중 제5쪽 마지막 행 앞부분에 "(라)"를 추가하고, 제6쪽 제3행의 "점

7) = 23,000,000원 × 2021년 GDP 디플레이터 108.417/2012년 GDP 디플레이터 95.073



등을 종합하면,"을 "점, 이에 더하여 증여의 경위 및 액수,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면, 이는 실질적으로 망인으로부터 상속인인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중 제6쪽 제4 내지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신탁재산인 예금 및 보증금반환채권

또한 피고는, 위 신탁재산은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주식회사 L(이하 'L은행'이라 한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탁계약은 수탁자인 L은행이 위탁자인 망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어서 무상·편무계약인 증여로 인정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8, 7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인 예금 및 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신탁재산'이라 한다)이 형식적으로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 시에는 이 사건 신탁재산을 상속인인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가 받은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이 사건 신탁재산은 유류분 반환의 순서와 관련해서는 사인증여에 준하여 취급해야 하는데,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562조), 결국 반환 순서에 있어서는 유증과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신탁계약은, 망인이 생전에 위탁자로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하여 망인이 사망한 때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하여



금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하게 하는 이른바 '유언대용신탁'이다(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1호).

② 이 사건 신탁계약의 결과 수탁자인 L은행이 이 사건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취득하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대가적 의미 있는 급부를 하지는 않았다. 나아가 유언대용신탁의 위탁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고(신탁법 제59조 제1항),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유언대용신탁을 종료시키고 신탁재산을 위탁자 명의로 복귀시킬 수 있는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한 이후로도 여전히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신탁법은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고 수탁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제23조)고 정하고,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국세 등 채납처분 등을 할 수 없고(제22조 제1항), 수탁자의 파산재단과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가지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지 않으며(제24조),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계가 금지(제2조)되도록 하는 등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독립된 재산으로 취급하고 있기도 하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법인세법 제5조 제1항, 소득세법 제2조의3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수익자에게 신탁의 이익이 지급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제33조 제1항)고 정하여 수탁자를 신탁재산의 종국적인 귀속 주체로 보고 있지 않다.

④ 이 사건 신탁계약 제2조 제3 내지 5호, <별첨2> 특약사항 제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재산의 수익권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망인이 가지게 되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비로소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이전되므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은 원수익자인 망인이 사망해야 비로소 사후수익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신탁재산의 귀속이라는 수익권을 향유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률관계를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민법 제562조가 정한 사인증여와 유사하다.

⑤ 더구나 망인이 사망하기 불과 약 1개월 전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바, 신탁의 최종적인 목적이 수익자인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이 사건 신탁재산을 증여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한 점,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최종적인 이익을 얻는 자는 수탁자가 아닌 수익자인바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수익자를 중심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그 증여재산을 통해 어떠한 수익도 얻을 수 없는데 반해 유언대용신탁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제3자를 수탁자로 지정함으로써 수익자인 상속인은 그 신탁재산의 수익을 피상속인의 사후에 향유하게 되는 점,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도 이 사건 신탁재산에 관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망인이 L은행에게 이 사건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유류분에 있어 제3자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을 수익자인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⑥ 비록 이 사건 신탁재산 중 보증금반환채권액에 상당하는 750,000,000원 이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하여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원고,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의 분쟁에 기인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위 공탁금에 대한 수익권은 사



후수익자인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중 제6쪽 제13행부터 제8쪽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망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

피고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별지 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각 증여받았으므로 이는 원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펴건대,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O아파트⁸⁾ P호(이하 'O 아파트'라 한다)의 매매대금 지원금 84,000,000원 및 O 아파트의 재건축부담금 지원금 199,540,820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O 아파트의 매매대금 지원금(별지 표 순번 1번)

을 제25, 27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이 2004. 4. 12. 10:49경 L은행 야탑동지점에서 망인 명의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여 90,231,027원을 출금하고, 같은 날 10:53경 같은 지점에서 원고 명의 L은행 계좌로 78,500,000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10:57경 원고의 위 계좌에서 위 금원이 출금되어 O 아파트 매매대금의 잔금 등으로 지급된 사실, ② 망인이 2004. 4. 16. 11:34경 L은행 야탑동지점에서 5,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1:35경 같은 지점에서 원고 명의 L은행 계좌로 같은 금액이 입금된 후, 같은 날 14:12경 O 아파트의 기존 대출금 중 같은 금액인 5,500,000원이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인정 사실들에 망인이 작성한 장부에 O 아파트의 매매대금과 관련한 기재가 존재하고 그 금액과 망인이 출금하거나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일치하는 점, 망인이 O 아파트의 잔금 7,55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던 점, 원고도 해당 금원을 망인으

8) 이후 2010년경 'Q'로 재건축되었다.



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 점, 다만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3. 5.경 망인에게 1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계약금 10,000,000원은 원고의 금원으로 충당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별지 표 순번 1번 기재 O 아파트의 매매대금 지원금 중 계약금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4,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부분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111,017,992원⁹⁾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망인에게 현금으로 맡긴 31,100,000원에 이자를 보탠 40,000,000원과 망 D에게 현금으로 맡긴 전세보증금 70,000,000원을 이용하여 망 인이 원고를 대신하여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고 부족한 금원은 망 D가 망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앞서 살펴본 2001. 3. 5.자 10,000,000원 외에 망 D나 망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갑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D가 망인에게 일부 금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망 D가 망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시기는 망인이 위 O 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한 일자와 약 두 달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등 그 시기가 일치하지 않거나 금원이 액수가 상이하고, 망 D와 망인 사이에는 평소에도 다수의 금융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 D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O 아파트의 재건축부담금 지원금(별지 표 순번 3번)

을 제36, 37, 39, 98, 99, 101, 103, 1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9) = 84,000,000원 × 2021년 GDP 디플레이터 108.417/2004년 GDP 디플레이터 82.032



사정들, 즉 ① 망인은 별지 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O 아파트의 재건축부담금 지원금을 무통장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도 망인이 피고 주장 금원을 대신 납입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망인이 해당 부담금을 납입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망 D가 이를 보전하였으므로 이는 망 D로부터 받은 금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 D가 해당 금원을 지급한 시기는 망인이 재건축부담금을 지출한 시기와 전체적으로 일치하지 않거나 시기가 일치하더라도 금원의 액수가 일치하지 않고, 망 D와 망인 사이에 평소에도 다수의 금융거래내역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망 D가 망인에게 일부 금원을 이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망 D가 재건축부담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199,540,820원¹⁰⁾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부분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250,283,994원(= 49,005,891원¹¹⁾ + 75,897,173원¹²⁾ + 54,478,683원¹³⁾ + 70,902,247원¹⁴⁾)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O 아파트 자체를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는 위 아파트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000,000원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O 아파트 재건축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해당 아파트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0) 피고는 이 부분 수증액을 199,537,62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각 세부 항목들의 합계액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 오기로 보인다.

11) = 37,466,000원 × 2021년 GDP 디플레이터 108.417/2005년 GDP 디플레이터 82.887

12) = 59,295,520원(24,639,710원 + 31,500,000원 + 3,155,810원) × 2021년 GDP 디플레이터 108.417/2007년 GDP 디플레이터 84.702

13) = 43,765,050원(6,258,700원 + 27,381,950원 + 4,300,000원 + 5,824,400원) × 2021년 GDP 디플레이터 108.417/2008년 GDP 디플레이터 87.096

14) = 59,014,250원(19,000,000원 + 18,381,850원 + 13,602,400원 + 8,030,000원) × 2021년 GDP 디플레이터 108.417/2009년 GDP 디플레이터 90.239



(다) 그 외 피고 주장 원고의 수증액

피고는,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별지 표 순번 2, 4 내지 14번 기재 각 금원을 증여받았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4, 40, 41, 43, 45 내지 52, 56 내지 63, 107, 120, 1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가 주장한 것과 같은 일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먼저 성남시 분당구 R 지상 S아파트 T호(이하 'S 아파트'라 한다)의 매수대금(별지 표 순번 7번)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갑 제41, 45, 59호증, 을 제1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작성한 장부(을 제120호증의 2)에 위 아파트 잔대금 175,000,000원 및 중개료 1,300,000원은 지출금액 항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S 아파트 매매대금은 망인이 아닌 망 D 명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되거나 망인이 망 D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후 매도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망 D가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망인이 이후 망 D에게 해당 금원을 다시 지급해준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과 망 D 사이에 이루어진 다수의 금융거래내역을 고려하였을 때 망인이 망 D에게 지급한 금원이 위 매매대금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부분 매매대금 지급 당시 O 아파트를 매도한 상태로 이 부분 매매대금을 충당할 수 있는 금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2009. 10. 30. O 아파트 매도대금 180,000,000원을 출금하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O 아파트 매도대금을 출금하여 망 D에게 지급하였고 망 D가 위 금원으로 이 부분 매매대금을 충당하였다는 원고의 변소가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부분 매매대금 285,000,000원을 증여받았



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O 아파트의 대출이자 지원금, 재건축취득세, 가압류 말소비용, 양도 소득세, U 및 V 월세, 차량구입금 및 할부금, 주택청약저축, 생활비 보조 명목의 현금, 건강보험료, 상속세 대납금액(별지 표 순번 2, 4 내지 6, 8 내지 14번 기재 각 금원) 등에 대하여 본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 여기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등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는 생전 증여와 같은 특별수익의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분배 원칙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생전 증여에 따른 특별수익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55 내지 63, 6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원고에게 월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U 월세 관련 65만 원, 그 이후 V 월세 관련 51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



인 점, ② 위 월세를 지급한 임대차기간은 U 및 V 임대차기간을 통틀어 약 3년에 불과하여 이를 장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생활비 보조 명목의 현금 지급내역으로 주장하는 거래내역을 살펴보다도 망인이 원고에게 약 17년 동안 132,573,37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1회 이체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내역은 거의 찾을 수 없고 지급기간과 지급액수를 고려하였을 때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O 아파트의 대출이자도 월 약 28만 원에 불과할뿐더러, 을 제107호 증을 포함한 피고 제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단지 원고 명의 계좌에 매월 현금이 입금 되었음이 인정될 뿐이어서 위 입금 내역만으로 망인이 해당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망인이 원고를 대신하여 O 아파트의 재건축취득세, 가압류 말소비용 및 양도소득세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하나, 원고 명의 계좌에서 2009. 11. 5. 19,000,000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망인 명의 계좌로 13,000,000원이 입금되기도 한바, 위 부대비용들이 원고의 금원으로 납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⑥ 망인이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상속세는 선행사건에서 망 D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망인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으로 이를 증여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망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과 망인이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증여한 재산의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표 순번 2, 4 내지 6, 8 내지 14번 기재 각 금원을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는 수증재산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상속채무

망인의 사망 당시 채무액이 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소결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은 5,500,902,757원(= 적극적 상속재산액 2,299,309원 + 원고의 수증액 합계 361,301,986원¹⁵⁾ + 피고의 수증액 합계 2,641,535,275원 + 제1심 공동피고 B의 수증액 합계 2,495,766,187원)이다.

다. 유류분 비율(B)과 유류분액(A×B)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원고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의 유류분 비율 및 유류분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단위 원, 이하 같다).

공동상속인	법정상속분	유류분비율(B)	유류분액(A×B)
원고	1/3	1/6	916,817,126
피고	1/3	1/6	916,817,126
제1심 공동피고 B	1/3	1/6	916,817,126

라. 특별수익액(C)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특별수익액은 361,301,986원, 피고의 특별수익액은 2,642,684,929원¹⁶⁾, 제1심 공동피고 B의 특별수익액은 2,496,915,841원¹⁷⁾이다.

마. 순상속분액(D)

1)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

15) = 111,017,992원 + 250,283,994원

16) = 1,149,654원(2,299,309원 × 1/2) + 2,641,535,275원

17) = 1,149,654원(2,299,309원 × 1/2) + 2,495,766,187원



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간주상속재산),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등 참조). 이렇게 계산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전체 공동상속인들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액으로 나누면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비율, 즉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계산한 결과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되(구체적 상속분 가액 0원),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조정하여 위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산출함이 바람직하다. 결국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 98, 99, 100, 101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계산

가) 간주상속재산: 5,500,902,757원(= 적극적 상속재산액 2,299,309원 + 원고의 수증액 361,301,986원 + 피고의 수증액 2,641,535,275원 + 제1심 공동피고 B의 수증액 2,495,766,187원)

나) 법정상속분액 및 특별수익 공제 후 구체적 상속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의 각 법정상속분액 및 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공동상속인	간주 상속재산 (①)	법정 상속비율 (②)	법정상속분액 (③=①×②)	특별수익액(④)	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 (⑤=③-④)
원고	5,500,902,757	1/3	1,833,634,252	361,301,986	1,472,332,266
피고		1/3	1,833,634,252	2,642,684,929	-809,050,677
제1심 공동피고 B		1/3	1,833,634,252	2,496,915,841	-663,281,589

다) 초과특별수익자의 발생에 따른 구체적 상속분의 수정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은 초과특별수익자이고, 그 초과특별수익분의 합계액은 1,472,332,266원(= 809,050,677원 + 663,281,589원)이므로, 나머지 상속인(원고)이 위 1,472,332,266원을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을 제외하고 산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그 계산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상속인	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 (①)	초과특별수익(②)	분담비율 (③)	초과특별수익 안분액 (④=②×③)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액 (⑤=①-④)
원고	1,472,332,266	1,472,332,266	1	1,472,332,266	0

라) 순상속분액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상속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순상속분액은



0원이고, 초과특별수익자인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의 순상속분액도 각 0원이 된다.

바.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A \times B - C - D$)

이상을 토대로 계산하면, 망인의 상속인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양수는 부족액을, 음수는 초과액을 각 가리킨다).

공동상속인	유류분액(A×B)	특별수익액(C)	순상속분액(D)	유류분 부족액
원고	916,817,126	361,301,986	0	555,515,140
피고	916,817,126	2,642,684,929	0	-1,725,867,803
제1심 공동피고 B	916,817,126	2,496,915,841	0	-1,580,098,715

사. 유류분 반환방법 및 범위

1) 관련 법리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1116조에 의하면,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등 참조).

또한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2) 유류분 반환방법 및 반환범위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유류분 부족액에 관하여 가액반환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특별히 이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가액반환을 명하기로 한다.

나) 피고의 유류분 반환비율 및 원고에 대한 유류분 반환금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¹⁸⁾

반환의무자	유류분 초과액	유류분 반환비율	유류분 반환금액 ¹⁹⁾
피고	1,725,867,803	1,725,867,803 /3,305,966,518	290,004,659
제1심 공동피고 B	1,580,098,715	1,580,098,715 /3,305,966,518	265,510,480
합계	3,305,966,518	1	555,515,139 ²⁰⁾

다)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각 유류분 금액은 위

18) 여주시 M 1,795㎡ 중 1/3 지분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2,299,309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가액은 위 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추인된다.

19) =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555,515,140원 ×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의 각 유류분 반환비율

20) 원 미만 버림으로 인하여 1원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유증액 1,149,654원(= 2,299,309원 $\times$ 1/2) 및 신탁재산의 가액 1,200,766,187원(= 825,766,187원 + 375,000,000원)을 합한 1,201,915,841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90,004,659원의 반환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 290,004,6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1. 12.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2024. 2. 6. 원고에게 판결금 원리금 합계 438,497,782원 및 소송비용 8,977,253원 등 총 447,475,035원을 가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 중 이 법원이 인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판결 선고로 실효되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령한 위 판결금 원리금에 대한 가지급금 중 이 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실효되는 금액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의 인용금액을 기초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가지급금 지급일인 2024. 2. 6.을 기준으로 합계 321,428,451원[= 원금 290,004,659원 + 위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31,423,792원(= 원금 290,004,659원 $\times$ (2년 + 61일/365일) $\times$ 5%)]이다. 그렇다면 위 판결금 원리금에 대한 가지급금 중 이를 초과하는 117,069,331원(= 438,497,782원 - 321,428,451원)은 실효되어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17,069,331원 및 이에 대하여 가지급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24. 2. 7.부터 원고가 가지급물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형

판사 이용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9

판사 이해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9

별지

피고 주장 원고 현금 특별수익 내역

순번	내역	시기	해당연도 GDP 디플레이터	상속개시 당시가액	증거	주장 내용
1	○ 아파트 매매대금 지원금	04.04.02. 계약금 10,000,000	82.032	13,216,428	을25,27	망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송금
		04.4.12. 잔금 중 78,500,000		103,748,958	을25,28,2 9,30	망인이 7850만원 원고에게 송금, 원고가 잔금과 취득세, 중개료, 법무사 비용 등 지급
		04.4.19 대출금 상환 5,500,000		7,269,035	을31,32	망인이 원고의 L은행통장을 소지하고 9450만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였으나 현금으로 입금하였기에 증거가 명백한 550만 원만 주장함
2	○ 아파트 대출이자 지원금	2004.9. -2009.12 대출이자 28,310,668	90.239	34,013,649	을33~35, 을97	망인은 대출이자 자동이체 신청서에 망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함, 원고 계좌로 이자 이체, 원고도 모친의 상속분할 2019노합1195 사건 준비서면에서 인정
3	○ 아파트 재건축부담금 지원금 199,537,620	05.10.21. 37,466,000	82.887	49,005,891	을98-1,2 을99 1-4	망인이 납부 후 계약금 입금보관증 보관, 망인 자필 기록
		07.4.19. 24,639,710	84.702	31,538,375	을36,37	망인 L은행 계좌에서 시공사계좌로 입금
		07.8.20. 31,500,000		40,319,420	을37 을120-1	망인이 계좌출금 2700만 원과 현금 450만 원을 시공사에 입금
		07.8.21. 3,155,810		4,039,379	을37 을120-1	망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시공사에 입금, 무통장입금증 망인 보관, 자필메모
		08.4.21. 6,258,700	87.096	7,790,823	을37 을120-2	
		08.8.20. 27,381,950		34,085,020	을37 을120-2	
		08.8.28. 4,300,000		5,352,635	을101	망인이 현금으로 시공사에 입금, 무통장입금증 망인 보관, 자필메모
		08.10.23. 5,824,400		7,250,206	을37 을120-5	망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시공사에 입금, 무통장입금증 망인 보관, 자필메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9

		09.2.23. 19,000,000 재건축 1차 잔금	90.239	22,827,414	을37 을120-6	망인 계좌에서 미리 출금한 200 만과 당일 1,700만 원 출금하여 시공사에 입금, 무통장입금증 망 인 보관, 자필메모
		09. 2.26. 18,381,850 재건축2차 잔금		22,084,742	을37 을120-6	망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시공사 에 입금, 무통장입금증 망인 보 관, 자필메모
		09. 7. 9 13,602,400		16,342,506	을39	파고에게 부탁하여 시공사에 입 금, 무통장입금증 망인 보관,
		09. 7. 10. 8,030,000		9,647,586	을103-1,2 을102-7	무통장입금증 망인 보관, 자필메 모
4	○ 아파트 재건축취득세	09.5.6. 3,100,000	90.239	3,724,473	을40 을120-8	망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취득세 납부, 취득세 영수증 망인보관, 자필메모
5	가압류 말소비용	09.10.9. 10,000,000	90.239	12,014,428	을41 을120-9	○ 아파트매도 시 망인이 가압류 채권자에게 1,000만원 변제하고 말소, 자필메모
6	○ 아파트 양도소득세	10.1.29. 8,452,400	92.71	35,082,623	을43 을120-10	양도세영수증 망인이 보관, 자필 메모
7	성남시 분당구	11.07.12.계 약금	93.898	30,000,001	을45~47	2010. 6. 15. 망인이 모친의 N 통장으로 5억 3천만 원 입금, 2011. 7. 12. 해지금 522,244,660원에서 계약금 지급 하고 나머지 다시 입금 계약서와 영수증 망인이 보관
	S 아파트	3000만				
	305,000,000 중 지원금 285,000,000	11.7.29. 중도금 8000만		92,370,019	을48,49 을121-1	망인이 5,000만 원 입금. 망인이 지시 C가 3,000만 원 부담. 망인 이 입금확인서 보관
		11. 8. 18. 잔금 1억 7500만		210,252,496	을50~52 을121-2 갑43	모친에게 대신 송금하게 하고 영 수증은 망인이 보관. 망인이 2011. 8. 25. 모친에게 변제
8	U 월세	06.4.18. -2007.7.30. 9,491,500	84.702	12,148,945	을55,56	망인이 임대차 계약서 보관, 임대 인 W에게 월세 65만 원 입금
9	V 월세	07.8.30. -09.7.29. 12,258,500	90.239	14,727,887	을57,58	망인이 임대차계약서 보관, 임대 인 X에게 매월 51만 원 입금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9

10	스포츠지 차량구입금 19,100,000	13.10.23. 계약금 10만	96.042	21,561,033	을59 을120-11	원고, 망인, 피고가 함께 가서, 망인이 현금 10만 원 계약금 지 급, 망인이 원고에게 800만 원과 550만 원, 450만 원 등 총 1,800만 원 원고에게 입금, 추가 인도금 718,875원 지급 위해 100만 원 송금 계약서, 상품설명 서, 등록세 고지서 망인이 보관
		13. 11. 18 인도금 18,000,000			을60 을120-12	
		11. 19. 추가인도금 1,000,000				
	위 차량 할부금	13.12.6. -16.11.01. 10,935,612	101.986	11,317,788	을120-13 을106,107	망인이 원고 통장으로 이체 후 대출이자 자동이체. 망인이 자필 장부에 기재
11	주택청약저축	09.10.15. -2018.5.15. 10,000,000	104.756	10,349,479	을61 을31	망인의 L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L 은행계좌로 매월 10만 원씩 입금
12	생활비 보조	00.1.31. -03.12.1. (L은행) 15,860,000	79.544	21,616,887	을62 (1-9)	망인이 2004년부터 원고의 L은 행, N은행, Y은행 계좌로 생활비 송금(망인과 원고의 각 계좌에 기 록되어 있는 송금)
		04.10.28. -15.9.7. (N은행) 31,230,000	100	33,858,629	을62 (10-16)	
		08.06.27. -09.10. (Y은행) 17,100,000	90.239	20,544,672	을62 (17-21)	
		12.10.31. -18.08.30. (Y은행) 61,473,000	104.756	63,621,351	을62 (22-71)	망인이 원고의 계좌로 생활비 송 금(망인의 계좌에만 기록되어 있 는 송금)
		06.06.01. -17.1.31. (L은행) 6,910,370	104.253	7,186,379	을62 (72-246)	
13	건강보험료	2004.9.10. -2018.7.10. 10,651,820	104.756	11,024,079	을63 (1-37) 을108	망인이 원고의 건강보험료 대신 납부하고 영수증 보관
14	상속세 대납금액	2019.10.31. 143,122,326	103.977	149,233,900	을66	
합계				1,169,167,136		